

「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8월 13일, 평창군수
- 회부일자 : 2019년 8월 22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8월 2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주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대중교통 소외 지역주민에게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공영버스 사업(안 제3조)
 -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규정
- 요금(안 제4조)
 - 요금고시, 교통카드사용, 요금 면제대상 명시
- 차고지(안 제5조)
- 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, 교육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주68시간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관내에는 총13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노선은 대부분 미탄·방림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공영버스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3조에서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안 제4조에서는 요금고시, 교통카드 사용 및 요금 면제대상 명시 등 요금 안 제5조에서는 차고지 설치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운수종사자 자격, 준수사항 및 교육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.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공영버스 운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영버스”란 평창군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.
2. “노선”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.
3. “운행계통”이란 노선의 기점·종점과 그 기점·종점간의 운행경로·운행거리·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공영버스 사업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민의 교통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버스(이하 “공영버스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1.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·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
2. 벽지 또는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
3. 파업, 태업 등으로 평창군 농어촌버스(이하 “농어촌버스”라 한다)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요금) ①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와 평

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.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일정 범위 안에서 요금 할인 또는 무료 환승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등록된 장애인

2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
4. 6세 미만의 사람

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차고지) 공영버스 차고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법 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군·읍·면사무소 주차장, 공영부지,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6조(운수종사자 자격)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.

제7조(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)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.

제8조(운수종사자의 교육)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하되,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교육과 선진 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관리·감독)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전반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